

## 2026년 2학기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모집공고

관내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서대문구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(천연동) 입주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건 물 명 : 서대문구 꿈꾸는 다락방 (천연동 1개소)
2. 건물위치 :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19(천연동)
3. 신청대상 :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(휴학생 포함) 또는 입학 예정자  
※ 대학원생은 신청대상 제외
4. 모집인원 : **00명(2인실)**
  -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: 00명 (남·여학생)
5. 신청방법 : 공고문에 첨부된 입주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메일(bini26@sdm.go.kr) 제출  
※ 재학증명서 등 제반서류는 입사생으로 선정된 후 제출(☎문의: 02-330-1084)
6. 신청기간 : **2026. 6. 29.(월) ~ 2026. 7. 6.(월)**
7. 입주생발표 : 2026. 7월 말 ~ 8월 초 예정(개별통보)
8. 입 주 일 : 2026. 8월 말 이후 협의한 날짜
9. 임대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(단,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며, 2년 연장 가능)
10. 입주부담금(2인실기준) : **보증금 1백만원, 월 임대료 5만원(전기, 수도, 난방비 등 별도)**
11. 입주생 선발 평정기준 : 저소득층 학생 우선 선발 등
12. 입주조건
  - \*관내 사회기여활동 의무시간 충족 필수, \*\*도시관리공단 주관 안전 관련 교육 성실 참여
  - \*사회기여활동(관내 봉사활동) 의무 이행 시간 : 학기당 12시간
  -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**입주 후 서대문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(전입신고 필수)**

### ◆ 유의사항 ◆

- 1) 이 주택은 양도,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 또한 양도할 수 없음.
- 2) 이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, 최초 임대기간 경과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매년 5%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.

2026년 6월 29일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세부사항

## □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정보

### ○ 기본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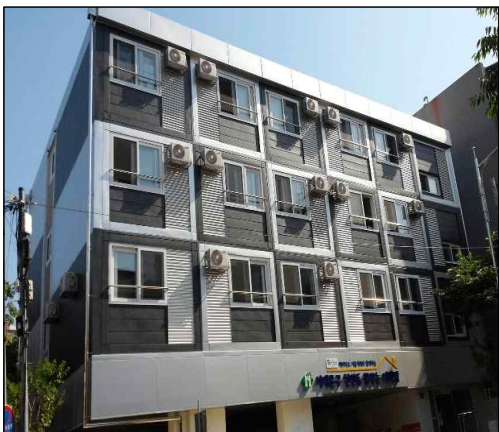
- 건 물 명 :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(2014년 준공)
- 주 소 :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19(천연동)
- 가 구 수 : 27가구 (2인실 21, 1인실 6) ※ 가구별 전용면적 20m<sup>2</sup> 내외
- 수용인원 : 48명
- 내부집기(2인실 기준) : 침대(2), 세탁기(1), 냉장고(1), 싱크대(1), 전자레인지(1), 책상(2), 의자(2), 옷장(1)
- 특이사항 : 난방·온수(도시가스) 및 전기·수도 등 개별 사용

### ○ 위치

- 3호선 독립문역 인근 영천시장 정류장에서 도보 8~10분 소요



### ○ 건물 내·외부사진



**임대기간** : 계약일로부터 2년 (단, 대학의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며, 계약만료 후 1회(2년)한 연장가능)

**입사생 부담금**

- 임대보증금 : 1백만원
- 월 임대료 : 5만원(2인실), 10만원(1인실)
- 관리비 : 전기, 수도, 난방비 별도

**입사생 선발 및 발표**

- 입사생 선발 : 평정기준에 의거 서대문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선정
- 입사생 발표 : 2026. 7월 말 ~ 8월중 예정(개별통보)  
 ※ 계약 체결 시 입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사가 취소되며, 입사 취소자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입사

**계약체결**

- 해당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, 입사보증금의 10%(10만원)를 납부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  
 ※ 입사 시 첫 달 임대료 및 보증금 잔액 납부

**입사생 평정기준**

평가항목	평가요소	평점
대학 소재지	-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	15점
사회적 배려대상자	가.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-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	10점
	나.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-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	7점
	다.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 세대의 대학생 (위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목의 '가, 나'의 해당자는 제외)	3점
그 밖의 가점	가.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	각 2점
	나.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(세대원에 한정함)	
	다.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' 장애인 부양(세대원에 한정함)	
	라.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모집 대상 학기 기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	

※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순위 : ①저학년인 자 ②성적우수자(직전 학기 성적) ③연령이 낮은 자

□ 서류 제출

- 기간 : 입주생 발표 후 7일 이내 (단, 예비자의 경우 발표 후 2일 이내)
-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서류	<p>1) 신분증</p> <p>2) 대학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</p> <p>3)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)            - B형 간염, 흉부x선 촬영(폐렴)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.            ※ 건강진단서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/p>
해당 자격별 서류	<p>1)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평정기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목의 '가, 나'의 경우            : 수급자, 아동시설 퇴소확인서(해당 시설에서 발급)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해당 증명서 및 입증서류</p> <p>2)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평정기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항목의 '다'의 경우           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 소득 금액(3인 이하 가구) 4,084,215원            *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 등 해당 소득입증서류 (부, 모, 본인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발급)            **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본인 기준, 상세증명서 발급), 등본            ※ 월 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수는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부모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            ※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          :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“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”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, 신청자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(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)를 의미합니다.</p> <p>3) 기타 해당 자격별 필요 서류</p>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.

※ 계약 체결 시 입주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, 입주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